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 미귀환 사망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유족에 대한
유족지원금 및 국군포로 관련단체에 필요 경비 지원 〉
■ 한기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38호)
〈 국군포로 지원 등 업무 국가보훈부로 이관 〉
■ 한기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71호)
〈 국군포로 유해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 국회보고 〉
■ 한지아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93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 춘 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미귀환 사망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유족에 대한 유족지원금 (한기호의원안 1)	6
2. 국군포로 또는 유족 관련 단체에 필요 경비 지원(한기호의원 안 1)	13
3.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한기호의원안 2)	16
4. 국군포로·귀환포로에 대한 서훈 수여 근거 명문화(한기호의원안 2)	29
5. 국군포로 유해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 국회보고 신설(한지아의원안)	31

I. 제안경위

구분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한기호의원안 1	한기호의원 등 10인	2026. 2. 24.	2026. 2. 25.
한기호의원안 2	한기호의원 등 10인	2026. 6. 24.	2026. 7. 1.
한지아의원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2026. 6. 25.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한기호의원안 1

제안이유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만이 귀환하는 경우에는 그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더라면 받아야 할 보수와 연금 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다 사망하였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을 감안할 때 유족으로서의 권리와 응분의 예우가 필요함.

이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는 경우에 받아야 할 보수와 위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관련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여 받아야 할 보수와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함(안 제15조).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유족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한기호의원안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였다가 억류국 등에서 귀환한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한 대우·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귀환포로를 제외하고 모든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역한 귀환포로는 더 이상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님에도 국방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성격상 국가보훈부가 담당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아울러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의 공로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서훈 수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하고, 국군포로·귀환포로에 대한 서훈 수여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및 제15조의5제1항).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한지아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기회 전까지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등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군포로 유해의 안정적인 봉환을 위하여 유해 발굴을 진행하는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의 유해 송환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미국은 과거 북한 지역에서 유해 발굴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향후 관계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재개될 경우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봉환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신설함으로써, 국군포로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의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정기회부터 적용한다.

Ⅲ. 검토의견

1. 미귀환 사망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유족에 대한 유족지원(한기호의원안 1)

□ 개정안은 미귀환 국군포로가 사망한 경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국군포로의 귀환 시 보수와 3등급 국군포로에게 지급되는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족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제9조에 따라 귀환하여 받아야 할 보수와 제11조제4항에 따라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일시지원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u>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와 유족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현행법상 귀환하여 등록한 포로는 보수 및 위로지원금 수급 자격이 있으며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지원금이 지급되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체계를 미귀환 포로의 가족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군포로 가족으로서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안하여 국군포로 유족으로서의 권리 보장 및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현행법은 억류기간 중 또는 귀환포로로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음.¹⁾

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이면서 억류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면 국군포로의 귀환포로로의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

개정안은 국군포로 본인은 미귀환하였으나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은 귀환하여 동법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한 가족을 대상으로 함.²⁾

□ 현행법상 귀환하여 등록한 등록포로는 보수와 위로지원금(월지원금 + 일시지원금)의 수급 자격이 있고 그의 사망 시 유족은 유족 지원금의 수급 대상이 됨.³⁾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귀환포로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보수의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한다. 다만,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로지원금)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를 위로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위로지원금을 월지원금과 일시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③ 월지원금의 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이라 한다)의 10배 이내에서 제6조제3항에 따른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1등급: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2등급: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

3. 3등급: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일시지원금은 월지원금 월액의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억류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까지 체류비용의 부족으로 국내 귀환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전에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억류를 벗어난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억류를 벗어난 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에게 월지원금 월액 중 일정액(등록포로가 사망할 당시

이에 비해 미귀환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경우 국군 포로가 귀환포로로 등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수와 위로 지원금(월지원금 + 일시지원금)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유족지원금의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고.

현행법 제15조에 따른 미귀환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만을 받을 수 있음.⁴⁾

국방부에 따르면 2026년 4월 현재 114가구의 미귀환 국군포로 가족에 대해 각각 4,79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115번째 가구에 대해 2026. 7. 10.일에 958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가구당 지원금인 4,790만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음.

즉, 개정안에 따르면 미귀환 사망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현행법상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외에 귀환

「군인연금법」에 따라 위관급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퇴역연금의 평균월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한다.

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이 영 시행당시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년도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00시간을 곱한 금액의 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지원금은 제3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가족대표자에게 지급하되, 가족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배우자

2. 자녀(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자순)

③지원금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이 결정된 후 3월 이내에 지원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똑같은 비율로 4회로 나누어 최초 지급일부 터 3월이 지난 후 매 반기마다 지급한다.

하여 등록된 등록포로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과 가구단위에서 비교 시 동등한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됨.

-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사건, 2020헌바395)에서,

심판대상 조항이 그 취지에 따라 등록이 불가능한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에게도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된다면 미귀환포로의 보수 등 지급청구 거부를 다투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가능성이 인정된다면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을 하였음.

다만,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단에서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보수청구권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형성된 권리로서 청구인의 부(父)는 국군포로송환법상 보수청구권을 구체적 권리로서 취득한 적이 없어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

- 개정안 심사 시 고려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5) 청구인은 사망한 부의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 및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재판관 5(합헌)대 4(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 2022. 12. 22.

첫째, 미귀환 국군포로의 사망 시점에 관한 사항임.

개정안은 미귀환 국군포로의 사망 시를 보수 등의 지급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사망 시에 따라 보수의 규모가 결정됨.

그런데 미귀환 국군포로 중에는 이미 사망한 경우, 생사확인 안되는 경우, 생존이 추정되더라도 사망의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망 시점을 특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보수 산정 기준일 규정에 관한 사항임.

현행법은 국군포로가 귀환하여 등록하는 경우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생각건데 현재 생존한 미귀환 국군포로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후 70년 이상이 경과하여 그의 연령이 당연히 60세를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법과 같이 60세까지를 억류기간으로 보고 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상기한 바와 같이 사망 시점의 특징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법이 보수 산정 기준일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서도 미귀환 국군포로의 사망 시 보수 산정 기준일에 관한 사항을 대강이라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현행법의 등록 거부 및 등록등급제와의 형평성에 관한 사항임.

현행법 상 국방부장관은 귀환한 국군포로가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하는 경우에도 억류지에서의 행적에 따라 3등급으로 등급을 정하여 월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등록 거부 및 등급 분류와 무관하게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이기만 하면 귀환한 국군포로에게 주어지는 보수 및 3등급 포로에 해당하는 유족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 등록포로 및 그의 억류지출신 가족과의 형평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귀환포로에 대한 보수 및 지원금은 국군으로서 적국에 억류되어 있던 자가 귀환하였을 경우, 등록 절차를 통해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파악하여 비례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위한 것으로, 휴전 이후 북한에 잔류하고 있는 모든 국군을 국군포로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임.

2. 국군포로 또는 유족 관련 단체에 필요 경비 지원(한기호의원안 1)

- ☐ 개정안은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필요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9조의3(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국군포로 관련 단체는 귀환포로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 귀환 국군포로 가족, 미귀환 국군포로 가족들의 국내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군포로 및 포로가족의 국내 정착 및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국군포로 관련 단체에는 (사)귀환국군용사회, (사)6·25국군포로유족회가 있음.

(사)귀환국군용사회는 귀환포로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회원의 고령,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활동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6·25국군포로유족회의 경우 70명의 회원이 귀환 국군포로 가족, 미귀환 국군포로 가족들의 국내정착 및 적응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봉사활동 및 기념행사 참석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2025년의 (사)6·25국군포로유족회의 활동을 보면 현충원 청소 봉사 3회 및 밥집 봉사 등에 참여하였고, 2회의 기념행사에 참석하였음.

[국군포로 관련 단체현황]

연번	법인명	대표자 성명	회원 수	목적 사업	활동실적(2025년)
1	(사)귀환국군용사회	유○○	6	귀환포로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	「귀환국군용사회」 정회원이 현재 6명이 있으나, 고령, 건강악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정관에 따른 활동을 못하고 있어 운영실적 제출이 제한됨.
2	(사)6·25국군포로유족회	박○○	70	귀환 국군포로 가족, 미귀환 국군포로 가족들의 국내정착 및 적응 지원	○ ('25.4.19, 5.17, 10.18.) 서울 및 대전 현충원 청소 봉사 ○ ('25.7.27.) 정전협정일 기념 임진각 참배 행사 ○ ('25.9.2.)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참석 ○ ('25.12.17.) 명동밥집 봉사 등

자료: 국방부

□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아 사무실 운영비 등의 비용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단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군포로 관련 단체의 필요 경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방부는 국군포로 관련 단체의 경우 국방부에서 비영리단체에 별도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한기호의원안 2)

☐ 개정안은 국군포로와 포로가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위로지원금,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의 각종 지원업무의 소관을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업무 이관 사항]

업무	소관부처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록 및 취소	☐	
사회적응교육	→	○
유전자검사	☐	
전역의 특례	☐	
특별진급	☐	
보수의특례	☐	
위로지원금	→	○
특별지원금	☐	
주거지원	→	○
의료지원	→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	○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	○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재개	→	○
국회 보고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u>국방부장관</u> 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u>국가보훈부장관</u> 은----- ----- -----.
제11조(위로지원금) ① <u>국방부장관</u> 은 등록포로를 위로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위로지원금을 월지원금과 일시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11조(위로지원금) ① <u>국가보훈부장관</u> 은-----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국방부장관</u> 은 등록포로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억류지를 벗어난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억류지를 벗어난 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에게 월지원금 월액 중 일정액(등록포로가 사망할 당시 「군인연금법」에 따라 위관급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퇴역연금	⑤ <u>국가보훈부장관</u> 은----- ----- ----- ----- ----- ----- ----- ----- ----- -----

의 평균월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⑥ ~ ⑦ (생 략)

제13조(주거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보증금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등록포로는 주민등록 전 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주거지원으로 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전세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권등의 등기신청은 등록포로를 대리하여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전세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의료지원) 국방부장관은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주거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

② -----

국가보훈부장관의-----

-----.

③ -----

-----국가보훈부장관이-----

-----.

제14조(의료지원) 국가보훈부장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 비용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포로가족이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송환하여 안장한 때에는 유해 송환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군포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그 국군포로 유해 및 포로가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5조의3(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은-----

-----.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 비용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은-----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5(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재개)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
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은

에 대한 취업지원) 국가보훈부
장관은-----

-----.

제15조의5(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우를 하고,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

재개) ①국가보훈부장관은-----

-----.

1 ~ 3.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사람에 대하여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u>국방부장관은</u>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우 또는 지원이 중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대우 또는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1 ~ 3. (생략)	----- -----. ③ <u>국가보훈부장관은</u>-----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 이는 전역한 귀환포로는 더 이상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님에도 국방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성격상 국가보훈부가 담당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보임.

현행 정부조직법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군포로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서 발생하였으며, 귀환 후 전역한 국군포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⁶⁾이므로 국가유공자⁷⁾ 대상에 포함됨.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실제로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군포로를 보훈보상의 원칙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국군포로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실시 중임.

일반적으로 보훈보상의 원칙은 희생의 형태와 크기에 비례한 보상을 말하며 모든 유공자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입은 피해와 기여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상수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함.

현행 보훈 체계에서 참전유공자는 신체적 희생(상이)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사례 중 하나이며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으나 별도의 신체적 부상(상이 등급)을 입지 않은 분들이 이에 해당함.

□ 이처럼 현행 법령상 현역 군인이 아닌 귀환 국군포로의 대우 등에 관한 업무의 경우 국가 보훈 사무의 측면에서 국방부가 아닌 국가보훈부 소관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참고로, 미국은 보훈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서 귀환 이후 전역한 포로들에 대한 연금, 교육훈련, 주택대출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도 보훈청 (Veterans UK)에서 귀환포로를 포함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다만, 귀환 국군포로의 경우 일반 참전유공자와는 다른 지원을 받는바, 대표로적으로 일반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수당이 월 49만원인데 비해 귀환 국군포로의 경우 등급에 따라 월 최대 1,100만원의 위로지원금이 지원됨. 제도상으로는 참전유공자 수당과 위로지원금의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 생존한 귀환 국군포로의 경우 위로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관계로 병행 지원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다음으로, 일반 참전유공자 사망 후 생활이 어려운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의 배우자생계지원금이 지원되는데 비해 (2026년 3월부터 시행), 귀환 국군포로의 사망 시 「군인연금법」에 따라 위관급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퇴역 연금의 평균월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족지원금이 귀환 국군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됨.

[귀환 국군포로와 참전유공자 간 금전적지원 비교]

귀환 국군포로(국방부)				참전유공자(국가보훈부)	
보수	억류 당시 보수 관계법령에 근거해 억류시부터 60세까지 미지급 보수 지급			참전유공자 수당 및 지원금	
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라 별도 지급 (병은 해당 없음) • 수령 시 위로지원금에서 해당금액 만큼 차감			참전 명예 수당	국가가 6·25전쟁 및 월남전참전유공 자의 희생과공헌을 기리기 위해 지 급하는 수당으로, 2026년 기준 매월 49만원을 지급
위로 지원 금 중 월지 원금	-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43 의 10배 금 액 ⇒ 11,026천원	-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43 의 7배 금 액 ⇒ 7,718천원	-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43 의 6배 금 액 ⇒ 6,616천원	지자체 참전 수당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 도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평균 26 만3천원의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 지자체별 지급격차완화 및 상향평 준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중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 협조요 청 계획
위로 지원 금 중 일시 지원 금	- 월지원금 월액의 40 배 해당금 액 ⇒ 441,048,936 원	- 월지원금 월액의 40 배 해당금 액 ⇒ 308,734,255 원	- 월지원금 월액의 40 배 해당금 액 ⇒ 264,629,362 원	생계 지원금	80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 소득50% 이하인 저소득참전유공자의 생활안 정을 위해 매월15만원을 지급
유족 지원 금	- 등록포로의 사망시 「군인연금법」에 따라 위관급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에게 지급하는 퇴역연금의 평균월액 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 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 급			배우자 생계 지원금	참전유공자 사망 후 생활이 어려운 고령·저소득배우자에게 매월15만원 을 지원 * 2026년 3월부터 시행

자료: 국방부

□ 또한, 개정안이 업무 이관의 대상으로 정한 사회적응교육, 주거지원,
의료지원,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등에서도 귀환 국군포로와 참전유공자 간 지원의 차이가 존재함.

특히, 귀환국군포로 사회적응교육장 운영, 억류지출신 국군포로가족 가족지원금 지급(세대별 4,790만원), 유해송환비용(1,500만원 한도), 주거지 인근부대 자매결연 등은 귀환 국군포로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임.

[귀환 국군포로와 참전유공자 간 의료지원금 등 비교]

귀환 국군포로(국방부)		참전유공자(국가보훈부)	
의료 지원금	연간 1,500만원 한도 내 진료비 (의료기간 외부 진료 행위 포함), 약제비,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중 본인부담금액 지급	의료지원	
		보훈병원 이용	전국6개보훈병원(중앙·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에서 진료를 받을 수있으며, 본인 부담진료비의 90%를 감면
		위탁병원 이용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 진료비의 90%를 감면 * 전국1,025개 위탁병원 지정(2026년5월 기준)
		무료건강 검진	참전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20세이상)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지원 * 매년5월 사전예약을 통해 6~7월 건강검진 실시
귀환국군포로 정착지원사업 : 북한인권센터 * 귀환한 국군포로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함, 가정방문, 사례관리, 심리상담, 콜센터 운영 등		복지·돌봄 지원	
		보훈원이 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수원보훈원에서 양로와 요양지원
		보훈요양 원 이용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참전유공자는 전국 8개 보훈요양원(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에서 요양서비스 *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서 시설·재가급여 이용시 대상자에 한해 본인

귀환 국군포로(국방부)		참전유공자(국가보훈부)	
			부담금의 60%지원
		재가복지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해 건강관리, 가사지원, 치매예방 등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제공
주거 지원금	- 보증금 : 5천만원(1-2등급), 4천만원(3등급) - 월세 : 60만원(1-2등급), 48만원(3등급)	주거 지원	
		주택우선 공급	무주택 참전 유공자가 신규건설·공급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아너 하우스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와협력
장례 지원 - 군병원 장례식장 무료이용 - 국립묘지 - 장례지원금 지원 : 360만원 - 장관님 명의 조의금 : 100만원		국립묘지 안장 및 장례 지원	
		국립묘지 안장	참전유공자는 배우자와 함께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으며,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참전유공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
		생전안장 심의	안장대상여부를 생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제도를 운영 *탈영·제적등병적기록에 이상이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제보조비	참전유공자사망 시 장제보조비 20만원을 지급 *국립묘지 또는 관련묘지**에 안장·안치하는 경우는 제외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한시설
		예우물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태극기와 대통령령의 근조기, 공적증서를 지원합니다
		장례 서비스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장례지도사, 고인용품, 빈소용품 등 장례서비스를 지원
		귀환국군포로 사회적응교육장 운영	
역류지출신 국군포로가족 가족지원금 지급 : 세대별 4,790만원		-	
유해송환비용 지급 : 1,500만원 한도		-	

귀환 국군포로(국방부)	참전유공자(국가보훈부)
주거지 인근부대 자매결연 * 주기적 가정방문, 초청 행사 동참(지원), 장례지원(조문, 운구) 등	-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등의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이 관장하므로 국가 보훈 사무의 일원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지원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국가보훈부로의 업무 이관 시기는 2028년 초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국가보훈부는 이미 보훈보상의 원칙에 따라 국군포로를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 참전유공자 등)로 등록하여 국군포로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실시 중인데, 신체적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상금 승계 등 유족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는바

동 개정안과 같이 국가보훈부에서 다른 보훈대상자와는 달리 국군포로 및 그 유가족에 대해서만 추가 지원을 실시할 경우 ‘보훈보상의 원칙’에 어긋나 다른 보훈대상자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가 있고,

국군포로 송환, 신변보호, 전역 특례, 특별진급, 보수 특례 등
국방부 고유의 소관업무와 연계성이 높은 국방부에서 이를 소관
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4. 국군포로·귀환포로에 대한 서훈 수여 근거 명문화(한기호의원 안 2)

☐ 개정안은 국군포로에 대해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5(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 <u>국방부장관은</u> 등록포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u>예우를 할 수 있다.</u> ② (생략)	제15조의5(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등) ① <u>국가보훈부장관은</u> ----- ----- ----- --예우를 하고,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국군포로에 대해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는 것은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의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정부는 「상훈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국군포로들에게 서훈을 수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공적이 확인된 국군포로 44명에게(귀환포로 22명, 미귀환포로 22명) 이미 훈장을 수여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서훈 수여의 근거를 동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실무적으로는 이미 「상훈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국군포로들에게 서훈을 수여하고 있으나, 서훈 수여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므로 동의 의견임.
- 국가보훈부는 국군포로·귀환포로에 대한 서훈 추천은 국군포로 지원업무의 성격과 연계성을 고려해 국방부 소관으로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5. 국군포로 유해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 국회보고 신설(한지아의원안)

- ☐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사항에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추가하고 있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국회 보고)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국회 보고)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 동법 제19조의2에서는 국회 보고사항으로 ①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②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③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 상황, ④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

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는 이에 따라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의 생활실태, 송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대우 및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하는 「국군포로의 문제 해결에 대한 보고서」를 2025년부터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2026년의 경우 7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음.

국방부는 이 보고서의 '국군포로 송환 추진결과' 부분에 '국군포로의 유해 송환 추진결과' 및 '송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을 포함하여 작성 중이고, 억류지(북한)에 있는 유해의 확인 및 송환 관련 내용⁸⁾은 현재 남북관계 교착에 따라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으로 향후 추진과제로 작성 중임.

즉, 개정안이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회 보고사항에 추가한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 추진 현황”은 동법상 명문의 규정 없이도 국군포로 송환 추진결과의 일부로서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포함되어 제출되고 있음.

-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유해 송환은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이자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로서,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국군포로의 문제

8) 국제사회를 통한 국군포로(유해) 송환 활동 노력, 국군포로 유해송환 지원에 관한 내용, 국군포로 유해 송환 성과(총 7구), 국군포로 유해 송환 관련 추진과제 등을 기술

해결을 위해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국군포로 유해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7